제306회 고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
제2차 본회의, 2025. 06. 30.(월) 10:40

# 「고령군 농어촌학교학생 야간 통학택시비 지원 조례안」

# 검 토 보 고 서

## 전 문 위 원

# 「고령군 농어촌학교학생 야간 통학택시비 지원 조례안」
# 검 토 보 고

## 1. 제 안 자 : 성낙철 의원

## 2. 제안이유

○ 고령군 소재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의 야간 통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귀가하는 통학생들에게 통학택시비를 지원하여 안전한 귀가를 도모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가.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~ 2조)

나. 통학택시비 지원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(안 제3조 ~ 제4조)

다.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라. 통학택시비 이용요금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
마. 비용의 신청 및 비용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(안 제7조 ~ 제8조)

바. 자료제출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 (안 제9조 ~ 제10조)

사. 준용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 ~ 제12조)

## 4. 관계법령 : 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」
「초·중등교육법」

## 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 고령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의 교육 기회 제공 및 안전한 귀가를 보장하기 위하여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.

○ 주요 내용으로는 관내에 주소를 둔 고등학교 재학생 중 학교에서 자택까지 귀가 거리가 3㎞를 초과하는 학생이 야간학습 참여로 인해 대중교통으로 귀가할 수 없는 경우, 1회 1,000원의 비용으로 안심귀가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심귀가 택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,

○ 본 조례안 제정시 관내 고등학교 학생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교육 기회를 도모하는데,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

이상으로

「고령군 농어촌학교학생 야간 통학택시비 지원 조례안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## 관 계 법 령

### □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

**제3조(정의)**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농어촌”이란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5호와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.
2. “농어업”이란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.
3. “농어업인등”이란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촌 주민 및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과 어촌주민을 말한다.
4. “농어촌학교”란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농어촌에 있는 학교를 말한다.
5. “공공서비스”란 주거·교통·교육·보건의료·복지·문화·정보통신 서비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한다.
6. “농어촌서비스기준”이란 농어업인등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요구되는 공공서비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항목과 그 항목별 목표치를 말한다.

**제23조(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)**

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학금, 수업료, 급식비 및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12. 31.>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기준에 미달하는 농어업인에게 제1항에 따른 경비와 체험학습비 등 부대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### □ 초·중등교육법

**제2조(학교의 종류) 초·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.**

1. 초등학교
2. 중학교·고등공민학교
3. 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
4. 특수학교
5. 각종학교